

- 규 정 -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이하 의회)의 조직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의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의회는 청소년 의원, 대의원, 청소년 기자단, 청소년 비평단 그리고 청소년 활동을 관리/운영할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 ② 의회의 청소년 의원의 수는 100인 내외로 하며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의장단은 청소년 의원을 대표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선거인단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3조(규칙제정)

의원과 관련된 규정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만 가능하며, 재적의원 1/2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2 장 의원 임기 및 사퇴

제4조 (의원임기 및 만료)

- ① 의원의 임기는 의원총회에서 의원선서 및 발대식과 동시에 시작한다. 단, 의원총회동안 자격에 의심이 가는 자는 사무국에 의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3개월 의원활동 후 첫 의원간담회에서 의원 임명장이 발급된다.
- ② 의원의 임기는 차기 의원들의 당선자 연수 및 의원 총회 시 만료된다.

제5조 (의원의 사퇴)

의원이 사퇴를 하고자 할 경우 사퇴서를 의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단은 사퇴서가 제출된 이후 첫 의장단 회의에서 사퇴서를 심의하여야 하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수리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의장단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사무국은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규정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들에게 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연수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7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대한민국의 만 13세에서 20세까지의 청소년은 피선거권이 있으며 만 13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당선자 결정)

당선자 결정은 다득표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재투표를 진행한다.

제9조 (선출)

-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일은 차기의장이 선출되는 전날까지로 한다.
-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구성)

의장단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 서기 1인, 수석대변인 1인으로 구성하며 수석대변인의 재량에 따라 대변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 (겸직)

의장단은 위원장 및 위원 등 의회의 어떠한 직책도 겸직하지 아니한다. 의장단 후보자에 출마할 시 무직책으로 특정 위원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아니한다. 또한, 의장단은 청소년의 전국적인 대표를 표방하는 단체의 직도 겸할 수 없다. 직을 겸한다면 의장단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불신임)

- ① 30인 이상의 의원은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통과된다.
- ③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즉시 지위를 상실하고 그 회기 안에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13조 (의장의 역할)

- ① 의장은 운영위 회의,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정리하며 의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 ③ 의장은 직권상정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며 의회를 대표한다.

제14조 (부의장의 역할)

- ①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이 지정한 또는 부의장들이 협의 하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② 기타 부의장의 업무는 의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 (수석대변인과 서기의 역할)

- ① 수석대변인과 서기는 의회의 대외적인 홍보와 기록을 담당하며 의장단이 선임한다. 또한, 수석대변인의 임기는 수석대변인을 선임한 의장의 임기와 같다.
- ② 의장단은 수석대변인을 해임할 수 있으며 수석대변인이 해임될 경우 새로운 수석대변인을 선임한다.
- ③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인 의회의 홍보를 위해 여러 명의 대변인을 선임하여 업무를 분담할 수 있으며 기타 수석대변인의 업무는 의장 및 부의장의 지시에 따른다.
- ④ 서기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제외한 의회의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4 장 상임위원회

제16조 (위원회의 종류)

의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두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행한다. 또한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추가할 수 있다.

정치법제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문화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학생권익위원회

제17조 (위원회의 배정)

- ①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르며,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② 의원은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의 동의로 상임위원회 이동이 가능하다.
- ③ 추후 기록 및 활동증빙을 위해 사무국에 변동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역할)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사무를 감독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6개월이며, 해당 위원회의 찬반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연임 할 수 있다.

제19조 (간사와 서기의 역할)

- ① 간사는 위원장과 함께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진행을 돕는다. 서기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맡는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③ 간사와 서기의 임기는 6개월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기타 간사와 서기의 업무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20조 (불신임)

각 위원회 위원은 같은 위원회 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 아래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장단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 재량으로 해당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제 5 장 회의

제21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의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매년 1회씩 집회하며 8월과 1월에 집회하되 필요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의장단의 참석과 재적의원 1/10 이상 참석을 준수한다. 일반 청소년들에게 단기적인 의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의를 가지며 안건은 정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정기회의/임시회의 본 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법안은 제 6대 청소년 의원 간담회에 회부되며 입법청원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다.

제22조 (상임위원회의)

- ① 상임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매월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집회하며 상임위원회의 재적의원 2/3 이상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상임위원회의는 상임위원장이 진행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간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③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불참자는 의결내용에 대해 건의할 수 없다.
- ④ 공식적인 상임위원회의에 불참하게 된 의원은 사전에 불참사유서를 위원장 혹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의장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개최한다.
- ② 운영위원 회의는 의장단,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며 일반의원과 사무국이 배석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사무국에 회부되어 일반의원들에게 통보 및 합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 ④ 징계안 및 제명안은 운영위원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 ⑤ 규칙 제정 및 개정시에는 재적의원 1/2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필요하다.

제 6 장 의원의 징계 및 제명

제24조 (제출)

모든 의원은 규정을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하여 의원의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징계안을 운영위원회의에 제출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25조 (수위)

징계의 수위는 경고와 2개월 이내의 유기정직이며 징계의 근거와 수위는 제안자가 같이 제출하되, 수위는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제26조 (제명)

모든 의원은 규정을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하여 의원의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안을 운영위원회의에 제출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에서 통과된 제명안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 7 장 자문위원

제27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며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한다. 자문위원은 입법청원안의 소개의원으로서 협력하며 상임위원회의 입법청원을 돕는다. 행사와 관련하여 국회 장소 대관 및 상장 협조, 강연 등 행사의 공동 주최로 활동할 수 있다.

제28조(자문위원의 위촉)

- ① 자문위원은 의원총회와 상임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사무국과 협의를 통해 국회 의원실에 협의 요청을 시도한다.
- ② 자문위원은 위원회당 최대 3인까지 위촉할 수 있으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단은 위촉패를 전달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임기)

모든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 장 부칙

의회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국회법을 준용하거나 통례에 따라 처리한다.

*상기 규정은 일부 수정될 수 있음.



(4) 연간 계획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입법청원과 캠페인)

- ① 입법청원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 위원회별 국회의원 1인 자문위원 구축
 - 위원회별 입법청원안 1개 이상 발의
- ② 의원간담회 (2013년 9월, 12월, 2014년 3월, 6월 중 2번 참석)
 - 활동을 평가하여 성실히 수행한 의원에게 활동증명서 및 의정프로그램 수료증 발급
- ③ 성명서 발표
 - 2013년 11월 3일 '학생의 날'에 "한국청소년인권선언" 진행
 - 2014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에 "청소년참정권요구" 성명서 발표
- ④ 다양한 캠페인 전개
 - 2013년 10월 3일 개천절, 2014년 6월 6일 현충일을 기점으로 캠페인 진행

(5) 입법청원

☞ 입법청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청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 26조

참고 : 국회법 제 9장 (청원) - 청원서의 제출(의원의 소개 필요), 청원의 심사·보고 등
/ 국회청원심사규칙(국회규칙)에서 청원심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 입법청원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

입법청원서 / 1인 이상의 소개 국회의원의 의견서 / 청원인 서명서 / 소개 국회의원의 서명 날인 부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입법청원 이력

2004년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국회제출

2007년 교육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2009년 민법개정안 국회제출 /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선거권 연령 조정 개정안 국회 제출

☞ 입법청원안 국회 처리 과정

접수 →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심사 → 폐기 or 채택
채택시 → 본회의 상정 → 정부 이송 → 정부 처리 결과 보고

☞ 입법청원안 채택 비율

2006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청원 건수는 모두 278건인데 그중 단 한 건만 채택

☞ 입법청원한 법이 채택될 확률을 높이려면?

십여 명의 청소년들이 며칠 동안 애써서 청원서를 작성하고 어렵게 국회의원을 소개를 받아 입법 청원을 한다면 국회에서 흔쾌히 채택될 수 있을까요? 입법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청원이 국민 전체의 뜻을 잘 반영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청원이 국민 여론에 맞는 것임을 입법 청원을 하기 전에 입증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입법 청원 서명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에 제출할 경우는 흔히 500명 이상의 서명자를 조직합니다. 가끔 '100만 서명 운동'을 한다는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100만 명은 아니더라도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다면 아주 성공적인 서명이라고 할 수 있고, 10만 명 이상을 받는다면 국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하고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입법 청원과 관련하여 여론 조성에 도움을 주는 언론 활동을 합니다. 기자회견, 신문 독자 투고, 인터넷 매체에 기사 쓰기, 포털 사이트에 여론 조사 문항으로 올리기,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슈 청원을 하기 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하는 일을 널리 알려 여론이 조성되도록 합니다.

셋째, 법률 제정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첫째와 둘째가 잘 진행되어 성과를 거두면 이러한 성과를 가지고 정당, 정부, 널리 알려진 사회 단체를 방문하여 그 대표자가 입법에 찬성하도록 설명하고 설득을 합니다.

넷째, 앞의 일을 하면서 입법 청원 추진 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하나의 새로운 질서 또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입법 추진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을 만들기 위하여 7개의 단체들이 '학생 인권법 입법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집회와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잘 조직되고 설득력 있는 집회를 하면 이를 언론이 보도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널리 알려 집회 참석자도 자신이 하는 활동에 대하여 지지자를 얻고 자신감 있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질서하거나 행사 후 발생한 쓰레기도 청소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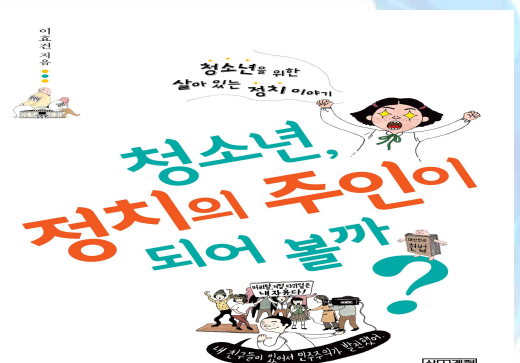
-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2014년 입법청원 활성화 계획

- ◆ 입법청원서 서명인원 확보 : 제 16회 임시회의 / 제 12회 정기회의 일반 청소년지지 서명
대한민국청소년의회 facebook 페이지를 통한 홍보
- ◆ 제 6대 청소년의원 입법청원 보도자료 배포 : 청소년의회 청소년 기자단 활성화
주요 언론사 및 청소년 언론사 협력 구축
- ◆ 법제정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설득 : 현직 국회의원을 위원회별 자문위원으로 위촉

☞ 청소년, 정치의 주인이 되어볼까?

- 사계절 출판사 / 저자 이효건



(6) 외국의 청소년의회



가. 독일의 청소년의회(Jugendparlament) 1)

- ▶ 구성 : 독일의 청소년 의회는 주 헌법에 의해 법적 공식성을 가진 기구이다. 청소년의회의 선거 및 피선거권은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4-18세의 청소년에게 주어지며 임기는 2년이다.
- ▶ 활동 : 가장 많이 다뤄지는 문제는 놀 거리, 청소년이 만날 수 있는 공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 놀이공간이나 시설의 수리, 공공장소의 안전, 에이즈, 극우주의, 마약에 대한 캠페인 조직 등이다.

나. 프랑스 어린이의회 (Parlement des Enfants) 2)

- ▶ 구성 : 1994년 당시 국회의장인 필립 세경 의원의 제안으로 제1회 『어린이의회』 개최, 이후 매년 5, 6월 중 토요일 하루에 하원 회의장인 부르봉 궁에서 열린다.
- ▶ 활동 : 프랑스 전국 지역구에서 뽑힌 어린이의원 577명이 각자 법률안을 내면 전문가들은 이 중에 10개 법안을 선정한다.
- ▶ 특이점 : 프랑스 어린이의회에서 선정한 법률안은 지역구 의원들이 넘겨받아 실제 법률로 만들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되어있다.

다. 핀란드 청소년 의회(Youth Parliament) 활동 3)

- ▶ 구성 : 청소년 의회는 핀란드 국회가 학교 클럽센터와 협력하여 구성한다. 매년 구성위원회에서는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학교 클럽 활동의 방향을 조정 한다.
- ▶ 활동 : 청소년 의회 구성위원회에서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활동과 온라인 코스, 교재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의회 클럽에서는 클럽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자료와 리플릿도 만들고 웹 사이트도 만들어 청소년 의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 ▶ 특이점 : 본회의가 끝나면 국회의장 주체로 리셉션이 열리고 리셉션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국회의원, 장관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는다.

1) 류현영(2010) 독일의 청소년 의회 (Jugendparlament) <http://www.politics.kr/?p=120#oWPj7trgy5ylRg8E.99>

2) 이정은 외 4인. “프랑스·독일 등 어린이·청소년의회도 민의 수렴”. 「세계일보」 2011.01.12., 온라인.

3) 조정주. “[조정주의 세계 속 교육] 핀란드 청소년 의회(Youth Parliament) 활동.” 조선일보 맛있는 교육. 2012.06.04., 온라인, 2013.07.26.

㉔ 캠페인 계획 수립



(1) 캠페인명

(2) 목적

(3) 시행일자

(4) 시행방법

(5) 예상효과

㉔ 성명서 계획 수립

<성명서 예시 : 전국초등학교스포츠강사연합회>

“초등학교 아이들의 소중한 건강”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학교체육활성화 정책” 허울 좋은 말 뿐인 정책인가?

- 1.“2012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예산 동결”(1500명-132억원)
- 2.“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확대배치”무산,“학교체육활성화 정책”말 뿐인가?
3. 전재희 위원장을 비롯한 28명의“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한 예산반영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5,854명 확대배치”와 관련하여 2011년 1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 대국민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되었다. 아울러, 6월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 하에 6,004명(일반학교 5,854명+특수학교 150명)확대 배치를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과 바람직한 체육교육의 기반마련을 위한 소중한 과제이며, 국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이다. 단순한 보도와 홍보적·정치적 수단으로 그쳐서는 안 될 국가적 주요 사안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주요 정부부처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적 사각지대로 소외되어 있는 특수학교 체육교육의 정상화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60,000여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적지 않은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체육계열학과 학생(한국체육대학생연합회)들의 미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계획만으로 마무리되는 비현실적 정책에 이르렀다.

1,516명의 기존 강사들은 열정적인 역할수행을 통한 높은 만족도와 학교현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4년째 임금동결과 10개월 계약직의 비현실적 계약의 굴레 속에서 한숨만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강사들의 노동적 여건개선은 소중한 “학교 체육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원활한 예산확보가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확보가 절실한 상황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의 예산반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기대하는 바이다. 지난 대국민 업무보고 당시,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이 논의 되었으나 확대배치라는 대승적 입장에서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차후로 양보한 상황이다. 만약, 정부에서 발표한 6004명 확대배치에 대한 예산반영이 어려운 현실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인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할 권리를 위해, 일정 인원의 확대와 처우개선(12개월 계약,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바이다.

- (1) 성명서명
- (2) 목 적
- (3) 시행일자
- (4) 시행방법
- (5) 예상효과

㉔ **위원단 구성**

(1) 위원장 선출

(2) 간사 선출

(3) 서기 선출

(4) 위원회 정기회의 일정

i. 오프라인 간담회

ii. 온라인 간담회



㉔ 위원회별 회의 <자문위원 구축>

청소년의 의사대변·권리향상·참여증진을 위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www.youthassembly.or.kr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동 1680-37 도원빌딩 208호 TEL) 070-7804-8838 FAX) 0303-3442-1450 Mail) yassembly@naver.com

의 장 :

상임위원장 :

문서번호 : 청소년의회 제20130901-01

시행일자 : 2013년 9월 ~ 2014년 9월

수 신 : 의원실

담 당 : 사무국 070 7804 8838

윤지희 010 2082 6258

제 목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 6대 청소년 의원> ○○○○ 위원회 자문위원 협조 요청안

1. 귀 의원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12조)과 대한민국청소년헌장(문화관광부, 1998년 제정)등의 청소년 사회참여 근거를 바탕으로 2003년 출범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당당히 드러내고 청소년의 의견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청소년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청소년들의 힘으로 독립 법인화된 단체입니다.
3. 2003년 6월에 출범한 제 1대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인권신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진행 하며, 2013년 8월 자격심사를 통해 100여명의 청소년을 선발하여 제 6대 청소년 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총 회원 수 10000명을 달성하고 300여명의 청소년 기자단, 비평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 국회의원을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 개 요 >

- 1) 제 목 : ○○○ 국회의원님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
- 2) 위촉 희망 이유 :
- 3) 요청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민국청소년의회사무국



⑧ 일정표

	8월 2일(금)	8월 3일(토)
08:00~08:30		8월 3일(토) 아침식사 퇴실준비 위원회별 발표 폐회식 귀가
08:30~09:00		
09:00~09:30		
09:30~10:00		
10:00~10:30		
10:30~11:00		
11:00~11:30		
11:30~12:00		
12:00~12:30		
12:30~13:00		
13:00~13:30		
13:30~14:00		
14:00~14:30	참가자 접수	* 참가자 접수 : 참가자 확인, 의원증/명함 배부 * 개회식 : 단체 소개 * 발대식 : 6대 의원 선서 * 의원연수 : 의원 활동 소개 * 캠페인 계획 수립 (가이드북 참고) * 성명서 계획 수립 (가이드북 참고) * 위원단 구성 : 위원장, 간사, 서기 선출 * 위원회별 회의 : 위원회별 온라인 회의 날짜, 입법청원 계획, 자문위원단 결정 (위원회 당 1시간 내외)
14:30~15:00		
15:00~15:30	개회식 & 발대식	
15:30~16:00	의원 연수	
16:00~16:30	캠페인 계획수립	
16:30~17:00	성명서 계획수립	
17:00~17:30	위원단 구성	
17:30~18:00	저녁식사	
18:00~18:30	위원회별 회의 1	
18:30~19:00	위원회별 회의 2	
19:00~19:30	위원회별 회의 3	
19:30~20:00	친목 도모	
20:00~20:30		
20:30~21:00		
21:00~21:30	취침	
21:30~22:00		
22:00~22:30		
22:30~23:00		

memo

